



헤지펀드 도입 관련 제반 규정의 내용과 국내 헤지펀드의 출범

이경아 연구원

요약

■ 헤지펀드와 프라임브로커 관련 모범규준(best practice)이 제정(2011. 12) 되었다. 이로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2011. 9)과 「금융투자법」 규정 개정(2011. 11)에 이어 헤지펀드(전문사모펀드)와 프라임브로커(전담중개업자)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일단락 지어졌다. 관련 규정이 확정되면서 오는 23일 10개 이상의 한국형 헤지펀드들이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헤지펀드 관련 규정은 이해상충방지체계 강화, 운용 전문성 확보, 투자자 보호 및 공시 강화를 중심으로 제정되었다. 프라임브로커 관련 규정은 신용공여 기준 및 방법,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강화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또한 초기 시장인 점을 감안하여 투자자 보호 취지에서 헤지펀드 투자를 어느 정도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 제한하였다.

■ 헤지펀드는 운용전략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나 감독규정에 따라 제한적인 투자자를 상대로 구성된 전문사모펀드로 차익기회(arbitrage)를 레버리지(leverage) 확대를 통해 투자하는 운용전략을 추구함.

● 헤지펀드(hedge fund) 운용수익률은 제한적인 차익기회를 얼마만큼의 투자를 통해서 실현시키는가에 따라 결정되므로 레버리지 수준(borrow securities and cash), 즉 공매도와 자금차입 능력은 헤지펀드 운용의 핵심 요인임.

■ 프라임 브로커는 헤지펀드 운용에 필요한 일체의 금융서비스(a bundle of package for hedge funds)를 제공하는 금융투자회사로 헤지펀드 신용공여의 주요한 역할을 담당함.

● 프라임 브로커(prime broker)는 헤지펀드 운용에 필요한 공매도(short selling)를 위한 증권대여(security lending), 신용공여(financing), 청산 및 결제, 위탁자산의 보관 및 관리 등 총괄적 서비스 제공함.

■ 국내의 경우 그 동안 추진되어 오던 헤지펀드(전문사모펀드)와 프라임브로커(전담중개업자) 관련 제반 규정이 정비됨에 따라 국내 헤지펀드들이 출시를 앞두고 있음.

- 금감원은 13개 자산운용사에 대해 헤지펀드 운용사 적격통보(12/5)와 증권회사의 프라임브로커 적격통보(12/12)를 마쳤으며 이번 달 23일 까지 헤지펀드의 상품 등록을 완료할 예정임(〈표 1〉, 〈표 2〉 참조).

■ 헤지펀드 운용업의 인가 요건 및 가입자 범위는 다음과 같음(「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9/27).

- 헤지펀드는 투자대상에 제한을 받지 않는 ‘혼합자산 펀드’로 분류되며, 헤지펀드 운용업 인가를 위한 최저 자기자본 금액은 60억 원(증권 40억 원, 종합자산운용 80억 원)으로 설정함.
- 헤지펀드 가입자 범위를 적격투자자인 금융기관에서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개인(5억 원 이상 투자자)으로 확대함.
- 헤지펀드 운용사의 금전차입 한도와 파생상품 거래제한 비율을 펀드재산의 400%까지 완화함.

■ 프라임브로커의 기준 및 전담중개업무 관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11/16).

- 전담중개업자는 자기자본 3조 원 이상으로 위험관리체계, 내부통제 조직,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헤지펀드에 대한 신용공여, 증권대차 등에 따른 담보관리 및 평가(collateral management)가 가능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
- 총 신용공여 한도는 원칙적으로 프라임브로커 자기자본 범위로 제한되며, 단 헤지펀드 자산을 재담보로 활용하는 경우 재담보의 신용공여한도를 자기자본 범위만큼 추가적으로 허용하여 총 신용공여의 한도를 자기자본의 2배 이내로 제한함.

■ 헤지펀드 운용사는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기준, 이해상충 방지 강화, 자기 헤지펀드에 대한 투자(seeding) 원칙 준수,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의 조치를 이행해야 함(헤지펀드 모범규준, 12/6).

- 헤지펀드 운용사는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여 동일 펀드에 투자할 수 없으며, 전체 헤지펀드에 자기자본 50%를 초과한 투자를 할 수 없음.
 - 운용사의 자기투자 자금은 투자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수될 수 있음.
- 투자권유 시 헤지펀드의 위험허용수준에 대한 투자자 설명의무가 일반 투자금융상품보다 강화되어 적용되며 위험허용수준의 변경 시에는 투자자에 대해 사전 통지하여야 함.

- 재간접헤지펀드(헤지펀드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 시 어느 정도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전문투자자 및 투자금액 1억 원 이상의 일반투자자)로 제한함.
- 일반투자자가 참여한 재간접헤지펀드의 경우 5개 이상의 헤지펀드에 분산투자하여야 하며, 분기별로 1회 이상의 환매기회를 보장해야 함. **kiri**

〈표 1〉 적격 헤지펀드 운용사 인가 및 적격 프라임브로커 요건확인 현황

구분	내용
적격 헤지펀드 운용사	미래에셋, 신한BNP파리바, 한국투신, KB, 산은, 삼성, 동양, 한화, 알리안츠, 교보약사, 미래에셋, 하나UBS, 우리자산운용
적격 프라임브로커	우리투자증권, 대우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위원회 확인 내용임.

〈표 2〉 출시 예정 헤지펀드 관련 현황

구분	프라임브로커
신한BNP명장아시아(J제외) 주식롱숏전문사모투자신탁1호	대우
한국투자펀더멘털 롱숏전문사모투자신탁1호	우리
신한BNPP명장 한국주식롱숏전문사모투자신탁1호	우리
삼성H클럽 Equity Hedge 전문사모투자신탁 제1호	대우
우리헤리티지롱숏1호	한국
미래에셋맵스스마트Q토탈리턴전문사모펀드1호	대우
미래에셋맵스스마트Q오퍼튜니티전문사모펀드1호	우리
미래에셋 이지스롱숏 전문사모펀드1호	우리
한화아시아퍼시픽롱숏사모전문투자신탁1호	우리
동양MY ACE안정형 전문사모투자신탁1호	삼성
동양MY ACE일반형 전문사모투자신탁 1호	한국
하나UBS프라임롱숏알파전문사모투자신탁	삼성

자료: 뉴스핌(2011. 12. 21 기사), 각사 자료 취함 내용임.